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08호 2023. 4. 19.(수)

거창한 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49호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23-50호 도로명주소 고시 …… 11
거창군 고시 제2023-51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686호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 16
거창군 공고 제2023-690호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1
거창군 공고 제2023-716호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 신청 공고 …… 29
거창군 공고 제2023-71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32
거창군 공고 제2023-720호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공고 …… 36
거창군 공고 제2023-721호 남상 한산(207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41
거창군 공고 제2023-723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 45
거창군 공고 제2023-726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정안 … 46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3 - 49호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거창군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어촌정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고제면의 잠재력과 지역 고유의 테마를 살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 업 비** : 5,950백만원(국 4,165, 도 535, 군 1,250)
4. **주요사업내용**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일원

   나.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 어울림센터조성, 어린이돌봄센터리모델링,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중심지가로 개선, 거창저수지주변 산책로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등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수탁)
6. **사업시행기간** : 2018. 01. ~ 2023. 06.
7.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940-8273)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940-5546)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

《토지》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어울림 센터	1	고제	농산	748	1	답	878	878	거창군		수용
	2	고제	농산	748	2	답	787	787	거창군		수용
	3	고제	농산	755	3	답	78	16	거창군		수용
	4	고제	농산	1855	12	답	10	10	거창군		수용
	5	고제	농산	1855	13	답	23	11	거창군		수용
	6	고제	농산	1855	14	전	7	7	거창군		수용
	7	고제	농산	758	3	답	36	36	거창군		수용
	8	고제	농산	1855	17	답	95	42	거창군		수용
	9	고제	농산	1855	18	답	17	17	거창군		수용
	10	고제	농산	747		답	119	119	거창군		수용
	11	고제	농산	750	6	창	191	191	거창군		수용
마을안길 정비사업	12	고제	농산	201	4	도	544	217	국(건설부)		사용
	13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393	국(건설부)		사용
	14	고제	농산	1855	8	구	25	1	국(농림수산부)		사용
	15	고제	농산	1871		도	754	87	국(건설부)		사용
	16	고제	농산	781	1	도	203	5	국(건설부)		사용
	17	고제	농산	754	7	도	1,165	53	국(건설부)		사용
	18	고제	농산	746	3	도	111	7	국(건설부)		사용
	19	고제	농산	1856		도	998	356	국(건설부)		사용
	20	고제	농산	753	4	대	1,266	6	국(경찰청)		사용
	21	고제	농산	1856	1	대	231	0.02	국(건설부)		사용
	22	고제	농산	1855	7	도	21	10	국(건설부)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마을안길 정비사업	23	고제	농산	188	8	도	1,458	0.20	국(건설부)		사용
	24	고제	농산	186	7	도	78	12	국(건설부)		사용
	25	고제	농산	1851	3	구	441	8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6	고제	농산	1861		도	312	238	국(건설부)		사용
	27	고제	농산	1857		구	194	90	국(농림수산부)		사용
	28	고제	농산	207	1	대	109	1.00	국(기획재정부)		사용
	29	고제	농산	213		구	6,176	202	국(농림수산부)		사용
	30	고제	농산	1876		구	632	69	국(농림수산부)		사용
	31	고제	농산	1876	2	구	70	67	국(농림수산부)		사용
	32	고제	농산	1880		도	108	45	국(건설부)		사용
	33	고제	농산	1879		도	99	8	국(건설부)		사용
	34	고제	농산	1875		도	827	86	국(건설부)		사용
	35	고제	농산	200	5	대	136	117	거창군		사용
	36	고제	농산	1854	7	대	36	1	거창군		사용
	37	고제	농산	200	9	대	40	25	거창군		사용
	38	고제	농산	1854	8	대	26	6	거창군		사용
	39	고제	농산	1855	5	대	22	1	거창군		사용
	40	고제	농산	251	1	대	150	150	거창군		사용
	41	고제	농산	201	5	대	41	37	거창군		사용
	42	고제	농산	184	3	학	152	5	거창군		사용
	43	고제	농산	252		체	2,009	81	거창군		사용
	44	고제	농산	253		전	1,512	58	거창군		사용
	45	고제	농산	254		창	392	77	거창군		사용
	46	고제	농산	680	2	도	20	12	거창군		사용
	47	고제	농산	산93	1	도	49	12	거창군		사용
	48	고제	농산	산92	2	도	64	25	거창군		사용
	49	고제	농산	산92	1	도	30	2	거창군		사용
	50	고제	농산	682	2	도	73	45	거창군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마을안길 정비사업	51	고제	농산	702	2	도	152	55	거창군		사용
	52	고제	농산	686	2	도	83	65	거창군		사용
	53	고제	농산	702	4	도	4	1	거창군		사용
	54	고제	농산	704	4	도	16	12	거창군		사용
	55	고제	농산	687	2	도	60	16	거창군		사용
	56	고제	농산	687	6	도	3	3	거창군		사용
	57	고제	농산	687	8	도	27	9	거창군		사용
	58	고제	농산	687	9	도	32	24	거창군		사용
	59	고제	농산	690	1	도	54	9	거창군		사용
	60	고제	농산	208	1	대	536	5	대○○○○○○○회(고신)총회유지재단		사용
	61	고제	농산	211		대	208	9	대○○○○○○○회(고신)총회유지재단		사용
	62	고제	농산	211	1	대	67	0.1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3	고제	농산	208	3	대	327	6	대○○○○○○○회(고신)총회유지재단		사용
	64	고제	농산	208	5	대	49	44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5	고제	농산	208	4	도	150	105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6	고제	농산	208	6	차	49	3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7	고제	농산	690		답	105	36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8	고제	농산	786		대	284	22	이○영 외 3인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사용
	69	고제	농산	785		대	192	18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사용
	70	고제	농산	787		대	152	1	이○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사용
	71	고제	농산	783		대	351	33	박○래		사용
	72	고제	농산	759	6	답	268	84	성○화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번길	사용
	73	고제	농산	759	7	도	56	1	배○주		사용
	74	고제	농산	779		답	268	84	이○두	경남 양산군 철마면 고촌리	사용
	75	고제	농산	780		대	291	63	이○순		사용
	76	고제	농산	772	2	답	668	50	배○주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마을안길정비사업	77	고제	농산	773	3	답	780	55	성○화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번길	사용
	78	고제	농산	777		대	651	26	성○화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번길	사용
	79	고제	농산	775		대	347	12	유○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사용
	80	고제	농산	784		대	317	1	이○영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사용
	81	고제	농산	746	1	도	205	15	진○이		사용
	82	고제	농산	746	4	답	226	59	류○성		사용
	83	고제	농산	746	2	대	394	3	류○성	거창읍 상림리	사용
	84	고제	농산	산12	1	임	15,273	20	전○탁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사용
	85	고제	농산	산10		임	146,876	192	덕수이씨덕온종중		사용
	86	고제	농산	178		전	2,102	0.3	이○이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번길	사용
	87	고제	농산	205	1	대	145	4	박○규		사용
	88	고제	농산	1861	1	대	61	0.4	이○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길	사용
	89	고제	농산	209		대	60	10	이○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길	사용
	90	고제	농산	산95	5	도	384	276	류○철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사용
	91	고제	농산	680	1	전	76	64	박○화		사용
	92	고제	농산	산95	4	도	86	58	류○철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사용
	93	고제	농산	산95	35	임	3,255	14	유○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사용
	94	고제	농산	산95	1	임	9,368	54	유○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사용
	95	고제	농산	682	1	대	367	82	유○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사용
	96	고제	농산	686	3	대	304	7	김○영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사용
	97	고제	농산	702	3	답	30	27	박○원		사용
	98	고제	농산	703	4	도	12	9	백○흠		사용
	99	고제	농산	703	2	도	43	9	백○흠		사용
마을안길정비사업	100	고제	농산	704	3	도	10	5	이○복		사용
	101	고제	농산	산95	6	도	163	100	류○철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사용
	102	고제	농산	687	5	답	223	47	강○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용
	103	고제	농산	689		대	450	55	강○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104	고제	농산	688	3	대	304	29	유○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사용
	105	고제	농산	705	1	임	307	52	이○존	거창읍 상림리 367-3	사용
	106	고제	농산	687	1	대	50	9	이○만		사용
	107	고제	농산	201	2	도	155	21	미등기		사용
	108	고제	농산	200	2	도	469	52	미등기		사용
	109	고제	농산	251	2	도	251	57	미등기		사용
	110	고제	농산	200	4	도	36	8	미등기		사용
	111	고제	농산	745		답	119	2	미등기		사용
	112	고제	농산	752	1	대	162	17	미등기		사용
	113	고제	농산	752	2	도	17	5	미등기		사용
	114	고제	농산	204	2	도	109	46	미등기		사용
	115	고제	농산	203	5	도	307	125	미등기		사용
	116	고제	농산	203	3	도	63	17	미등기		사용
	117	고제	농산	203	7	도	327	200	미등기		사용
	118	고제	농산	202	2	도	248	137	미등기		사용
	119	고제	농산	188	3	도	205	53	미등기		사용
	120	고제	농산	188	10	도	616	0.4	미등기		사용
	121	고제	농산	687	7	도	137	73	미등기		사용
	122	고제	농산	706		대	112	24	미등기		사용
	123	고제	농산	688	1	대	7	4	미등기		사용
중심지가로	125	고제	농산	233	3	임	883	58	미등기		수용
	126	고제	농산	232	2	도	235	34	미등기		수용
	127	고제	농산	231	2	도	754	97	미등기		수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개선사업	128	고제	농산	224	2	도	1,031	113	미등기		수용
	129	고제	농산	1935		구	1,626	9	국(농림수산부)		사용
	130	고제	농산	250	4	도	489	73	미등기		수용
	131	고제	농산	249	8	도	579	19	국(건설부)		사용
	132	고제	농산	250	3	도	13	3	박○일		수용
	133	고제	농산	249	4	도	714	84	미등기		수용
	134	고제	농산	250	2	도	13	4	미등기		수용
	135	고제	농산	1851	3	구	441	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36	고제	농산	188	5	도	73	2	미등기		수용
	137	고제	농산	188	10	도	616	96	미등기		수용
	138	고제	농산	188	3	도	205	3	미등기		수용
	139	고제	농산	188	8	도	1,458	85	국(건설부)		사용
	140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62	국(건설부)		사용
	141	고제	농산	746	1	도	205	40	진○이		수용
	142	고제	농산	1856		도	998	2	국(건설부)		사용
	143	고제	농산	1855	19	구	1,856	12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44	고제	농산	742	1	도	255	26	거창군		사용
	145	고제	농산	789	2	도	122	14	김○옥	궁항리	수용
	146	고제	농산	790	3	도	86	19	미등기		수용
	147	고제	농산	790	4	답	36	1	유○옥	부산진구 백양대로 ***번길	수용
	148	고제	농산	791	2	도	79	5	미등기		수용
	149	고제	농산	791	3	도	7	6	국(건설부)		사용
중심지가로 개선	150	고제	농산	740	2	도	231	11	미등기		수용
	151	고제	농산	796	3	도	53	9	국(건설부)		사용
	152	고제	농산	796	2	도	486	29	미등기		수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사업	153	고제	농산	737	1	도	409	76	국(건설부)		사용
	154	고제	농산	746	3	도	111	4	국(건설부)		사용
	155	고제	농산	745		답	119	11 119	거창군		수용
	156	고제	농산	744		답	86	15 86	거창군		수용
	157	고제	농산	1856		도	998	2	국(건설부)		사용
	158	고제	농산	1855	19	구	1,856	1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9	고제	농산	743		대	83	24	미등기		수용
	160	고제	농산	742	6	답	41	10	이○택	개명리	사용
	161	고제	농산	742	5	답	350	50	이○주	농산리	사용
	162	고제	농산	1873		도	423	60	국(건설부)		사용
	163	고제	농산	742	2	답	135	9	이○주	배재로	사용
	164	고제	농산	741		답	126	34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65	고제	농산	741	1	답	56	9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66	고제	농산	1873	1	도	21	5	국(건설부)		사용
	167	고제	농산	1855	29	구	69	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8	고제	농산	740	7	답	144	11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69	고제	농산	739		답	374	29	김○영	경기 의정부시 효자로	수용
	170	고제	농산	737		답	1,818	25	이○노	농산리	수용
	171	고제	농산	1872		도	446	446	거창군		수용
	172	고제	농산	737	2	답	211	5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거창저수지	173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31	국(건설부)		사용
	174	고제	농산	1212	1	도	1,703	27	국(국토교통부)		사용
	175	고제	농산	1208	2	도	66	3	거창군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176	고제	농산	1208	3	도	7	1	거창군		사용
	177	고제	농산	1901		구	1,342	2	국(기획재정부)		사용
	178	고제	농산	1905		도	443	2	국(건설부)		사용
	179	고제	농산	1195	7	도	17	2	거창군		사용
	180	고제	농산	1208	1	답	867	3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1	고제	농산	1207	1	답	1,291	34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2	고제	농산	1206	1	전	63	2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3	고제	농산	122	3	임	3,414	287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4	고제	농산	124	2	임	1,577	58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5	고제	농산	124	6	도	201	5	국(건설교통부)		사용
	186	고제	농산	124	5	도	3,088	10	국(건설교통부)		사용
	187	고제	농산	1189	3	도	5,015	211	국(건설교통부)		사용
	188	고제	농산	197	6	도	236	15	국(건설교통부)		사용
	189	고제	농산	1185	1	도	163	7	국(건설교통부)		사용
	190	고제	농산	1195	1	답	825	67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마을회관 리모델링		고제	농산	753	10	대	308	308	고제면입석마을회		사용
돌봄센터 리모델링		고제	농산	757	5	답	329.4	329.4	거창군		사용
계								11,330.82 11,509.82			

거창군 고시 제2023 - 5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9.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308-99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3 - 51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거 창 군 수

1. **고시일자** : 2023. 4. 19.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4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번호	행정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앙선	건물번호	사물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남하면	변경 전	지산로	남하면 지산리 1001-3 (지산로 736-1)	남하면 지산리 산110-1 (지산로 736-177)	도면참조	2	1	종속구간 변경	직권
		변경 후	지산로	남하면 지산리 1001-3 (지산로 736-1)	남하면 지산리 1167 (지산로 736-229)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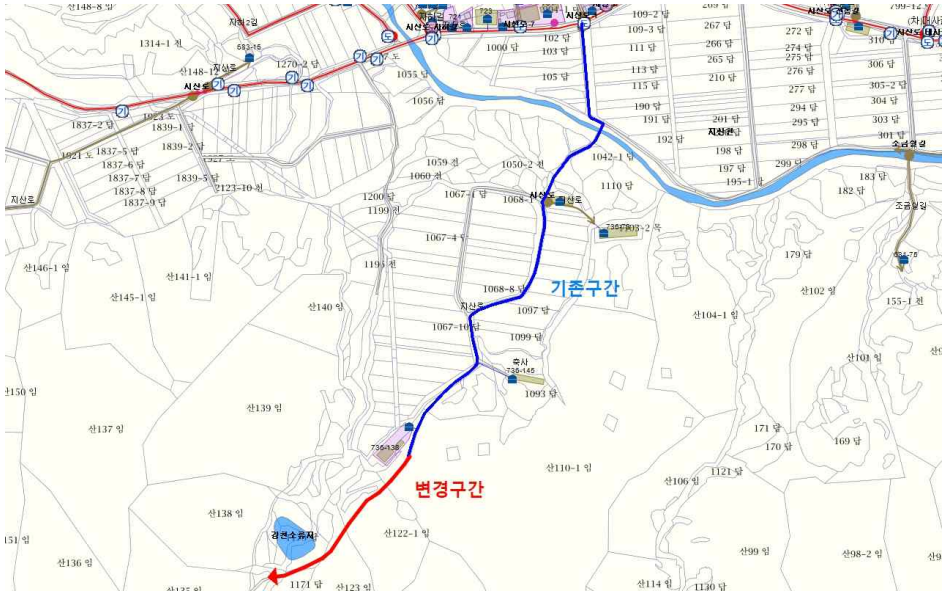

위성사진

일련번호	행정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앙선	건물번호	사물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2	위천면	변경 전	빼재로	위천면 당산리 821 (빼재로 628)	-	도면참조	1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빼재로	위천면 당산리 821 (빼재로 628-1)	위천면 당산리 173 (빼재로 628-90)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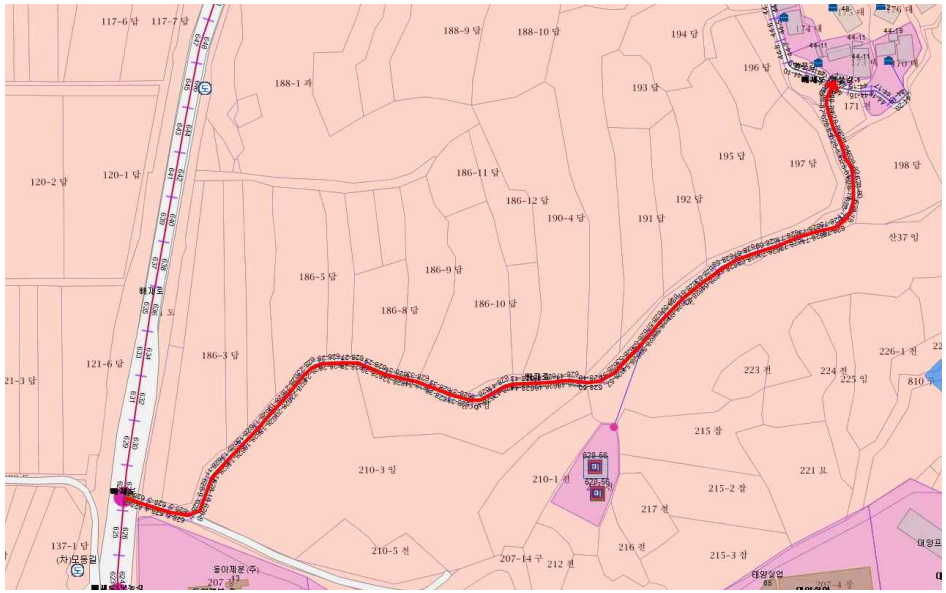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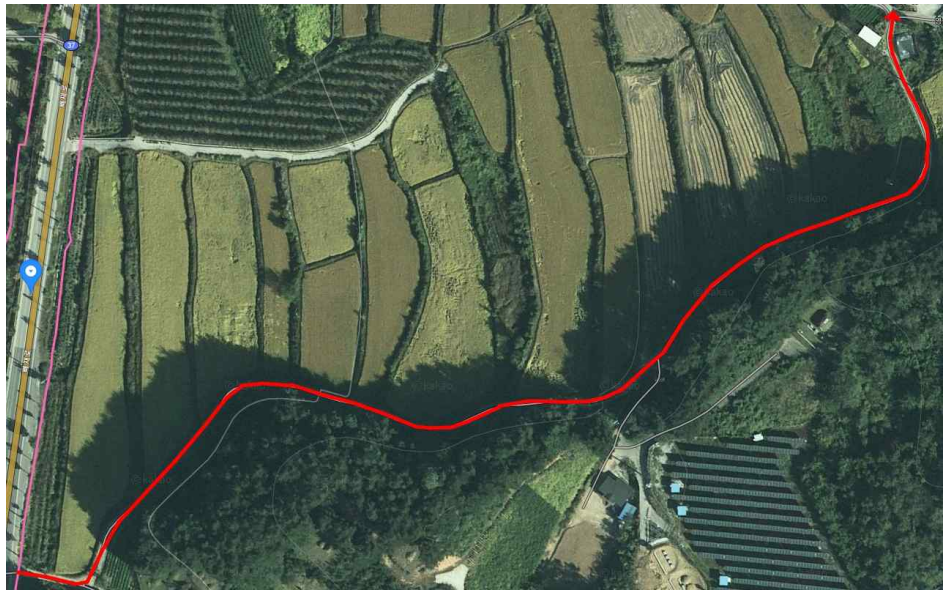

일련번호	행정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앙선	건물번호	사물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3	북상면	변경 전	산수병곡길	북상면 산수리 산37-42 (산수병곡길 229-1)	북상면 산수리 산30-1 (산수병곡길 229-77)	도면참조	3	없음	종속구간 변경	직권
		변경 후	산수병곡길	북상면 산수리 산37-42 (산수병곡길 229-1)	북상면 산수리 336-1 (산수병곡길 229-131)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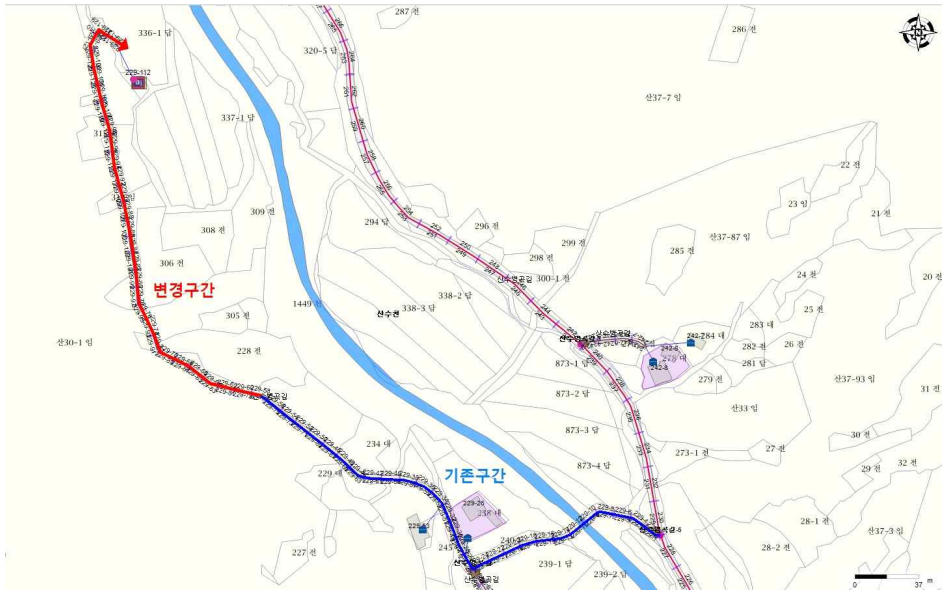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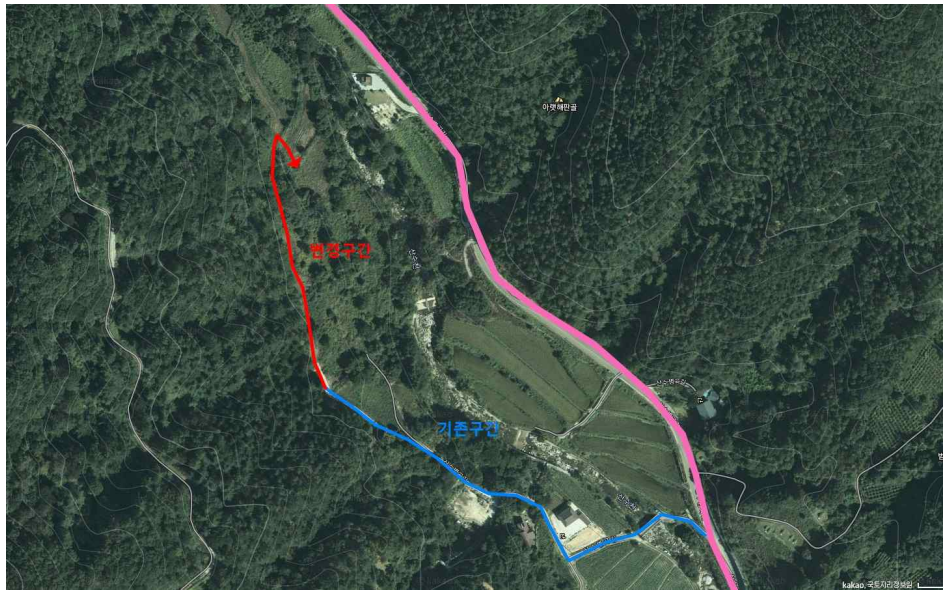

거창군 공고 제2023-686호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 등의 설정·부여 절차)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거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3. 4. 14. ~ 4. 28. / 15일간

2. **공고장소**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 ○ 도 로 명 : 한들로(안), 대평로(안), 송정지하도로(안)
   - ○ 도로구간 : 중로1-54호선(한들로, 대평로), 대로1-11호선(송정지하도로) / [붙임] 조서 참조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 2023. 4. 14. ~ 4. 28.
   - ○ 방문접수 : 거창군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 ○ 팩스접수 : 055-940-3288
   - ○ 우편접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5. **도로명 부여 절차**

도로명 부여 신청 또는 직권 부여	신청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의견 수렴공고	의견제출 기간 지난 날부터 →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고지
사업시행자 및 건물 등의 소유자 신청 기초조사 결과 반영		14일 이상		도로구간 및 도로명 심의.의결		• 심의결과 • 내용 및 절차

6. **문 의 처** : 거창군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3)

도로명 부여 조서

행정구역	도로유형 (위계)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부여사유
				도로길이	도로폭	기초간격	시작지점(기초번호)	끝지점(기초번호)	
거창읍	지상도로 (로)	1안	한들로	1,177m	20m	20m	거창읍 대평리 946 (한들로 1)	거창읍 대평리 440-44 (한들로 118)	중동의 동쪽에 있는 한들의 명칭을 활용
		2안	대평로				거창읍 대평리 946 (대평로 1)	거창읍 대평리 440-44 (대평로 118)	거창읍 대평리 시가지 중앙을 우회하는 도로

주소정보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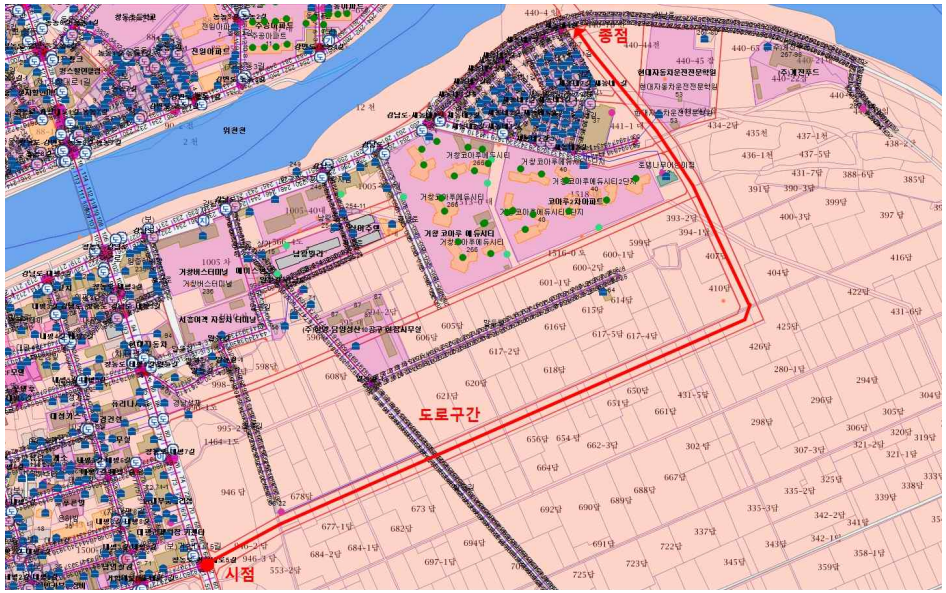

항공사진

행정구역	도로유형 (위계)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부여사유
			도로길이	도로폭	기초간격	시작지점(기초번호)	끝지점(기초번호)	
거창읍	지하도로 (대로)	송정지하도로	660.2m(상행) 660.0m(하행)	8m 8m	20m	거창읍 송정리 산103-14 (송정지하도로 1)	거창읍 송정리 884-5 (송정지하도로 68)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부여

주소정보기본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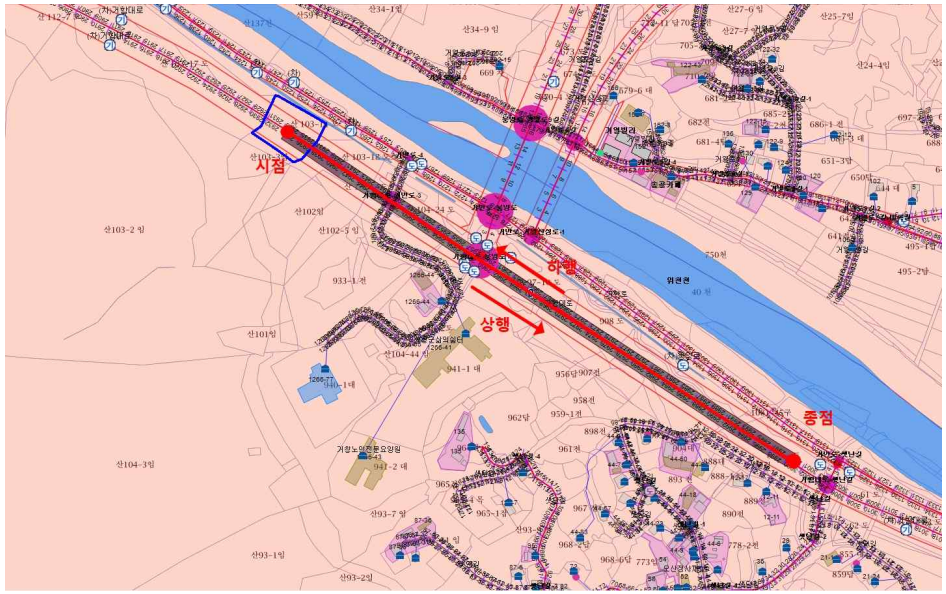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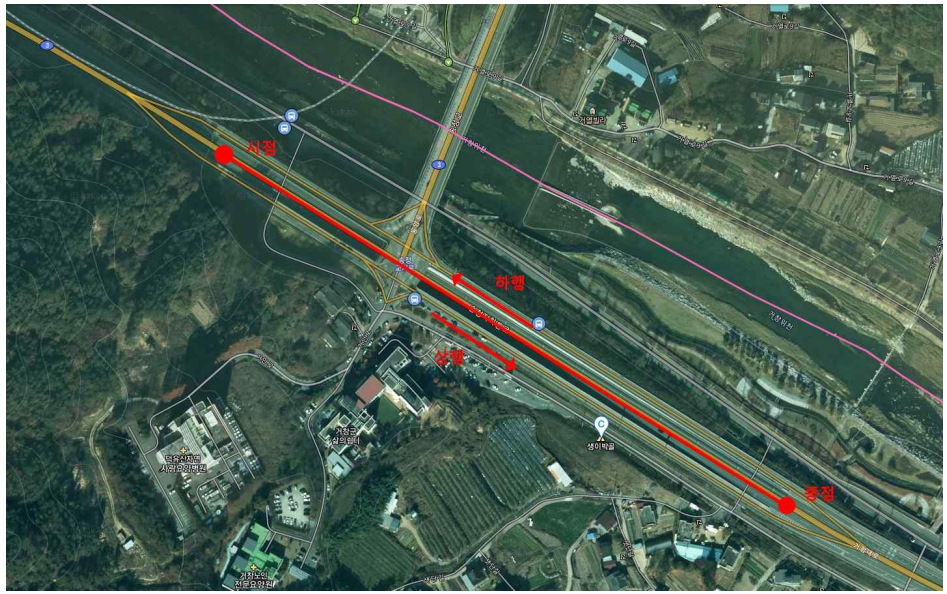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서

<table>
<tr><td rowspan="3">의견제출인</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
<tr><td>전화번호</td><td>전자우편</td></tr>
<tr><td colspan="2">주소</td></tr>
<tr><td rowspan="3">부여대상</td><td>도로명(안)</td><td>1안 한들로 (　)　2안 대평로 (　)　3안 기타 (　)</td></tr>
<tr><td colspan="2">도로구간(사업명)
거창읍 대평리 946 ~ 거창읍 대평리 440-44
(중로1-54호선 개설공사)</td></tr>
<tr><td>부여 사유 (근거)</td><td>한들로: 중동의 동쪽에 있는 한들의 명칭을 활용
대평로: 거창읍 대평리 시가지 중앙을 우회하는 도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1. 지명(문화재), 2. 위치 예측성)</td></tr>
<tr><td rowspan="2">의견제출 내　용</td><td colspan="2">도로명</td></tr>
<tr><td colspan="2">의견제출사유</td></tr>
<tr><td colspan="3">「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2">의견제출 소명 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td></tr>
</table>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서

<table>
<tr><td rowspan="3">의견제출인</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
<tr><td>전화번호</td><td>전자우편</td></tr>
<tr><td colspan="2">주소</td></tr>
<tr><td rowspan="3">부여대상</td><td>도로명(안)</td><td>송정지하도로</td></tr>
<tr><td colspan="2">도로구간
거창읍 송정리 산103-14 ~ 거창읍 송정리 884-5</td></tr>
<tr><td colspan="2">부여사유(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 부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td></tr>
<tr><td rowspan="2">의견제출
내 용</td><td colspan="2">도로명</td></tr>
<tr><td colspan="2">의견제출사유</td></tr>
<tr><td colspan="3">「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2">의견제출 소명 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td></tr>
</table>

거창군 공고 제2023-690호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주최자가 불명확한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사고예방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 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거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관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재난 및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옥외행사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2

5. 입법예고기간 : 2023. 4. 17. ~ 5. 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5. 8.(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점검담당
1) 주소 : (우 510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2) 전화 055-940-3792, 팩스 055-940-3629, 이메일 ssw0531@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점검담당(☎055-940-3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시행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

8.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및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이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공연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거창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할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군 관할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행사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4.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안전관리 총괄부서 및 관할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⑥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한다.

⑦ 군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보완 및 수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6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 유관기관에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6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제6조제5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관할 소방서장 및 군 소재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3 - 716호】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 신청 공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9.(수) ~ 5. 4.(목)
2. 사 업 명 :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
3. 신청대상 :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4. 구비서류
   - 조림지 풀베기사업(산주직접실행) 신청서 1부.
   - 임야대장등본 1부
   - 사업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6,000/1, 예정구역도 표시) 1부
5. 제출기관 : 산림과(산림조성담당) 및 읍·면사무소
6. 선정방법 및 절차 : 붙임참조
7. 문의사항 :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3),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2023. 4. 19.

거 창 군 수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5. ~ 9.

○ 대 상 지 : 21년~2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조림지 중 신청지

○ 사 업 량 : 조림지 풀베기 40ha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 지원내용 :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 지원(보조 100%)

○ 지원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행 완료 후 정산

○ 선정방법 :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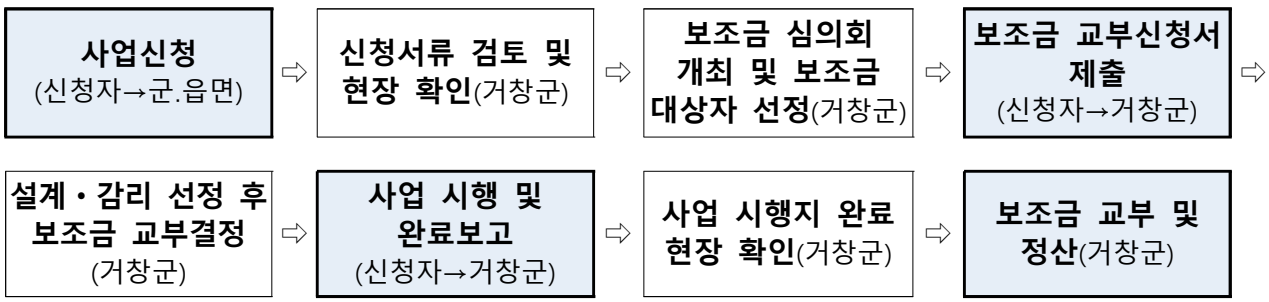

□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23. 4. 19.(수) ~ 5. 4.(목)

○ 신청 시 구비서류

- 조림지 풀베기사업(산주직접실행) 신청서 1부.
- 임야대장등본 1부.
- 사업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6,000/1, 예정구역도 표시) 1부.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 신청서

□ 산림 소재지 : 거창군　　읍·면　　리　산　　번지

□ 지　　적 :　　㎡

□ 풀베기 면적 :　　ha

□ 조 림 수 종 :

□ 조 림 년 도 :

※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등 산림소유자(산주)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대행하여 시행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시행 후 5년 이내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타용도 전용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변상금(설계·감리비,.보조금)이 부과될 수 있음.

위와 같이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신청하오니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

신청인(산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자　　격 :

거 창 군 수 귀하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3-718호

농림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 직권 용도폐지 검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항 같은법 시행령 32조의3에 의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주민 등은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8일

거 창 군 수

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검토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면적	비 고
가조면 기리 1546-2	구거	3,627㎡	118㎡	위치도 등 붙임 참고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 람 장 소	열 람 기 간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023. 4. 18. ~ 2023. 5. 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3. 4. 18. ~ 2023. 5. 2.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2 지적현황 및 사용허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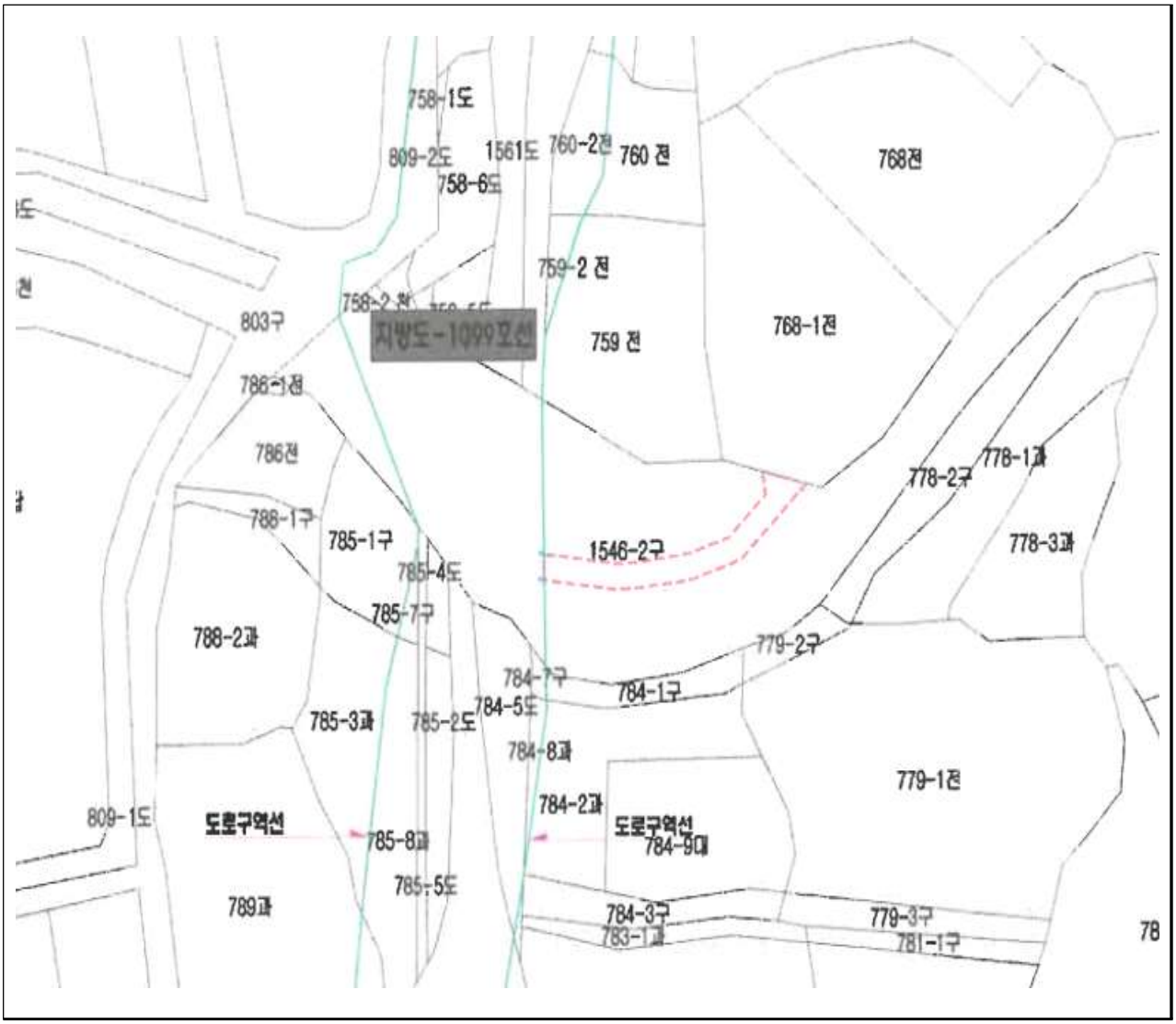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상 면적	사용허가 신청면적	비고
계(1필지)				1필지	118㎡	
1	가조면 기리	1546-2	구거	3,627㎡	118㎡	

거창군 공고 제2023 - 720호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공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4. 19.

거 창 군 수

☐ **공 모 명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23. 4. 19.(수) ~ 5. 19.(금) / 1개월간**

☐ **공모내용 : 고향사랑기금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안**

<고향사랑기금 활용 가능 사업 분야>

▷ 근 거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제2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 분 야

-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 보호
- ■ 지역 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등의 증진
-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응모대상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관심 있는 누구나**

☐ **응모방법**

○ 이 메 일 : oopssb@korea.kr

○ 방문/우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전략담당관(전략담당)

※ 이메일, 방문, 우편 ⇒ 접수 마감일 2023. 5. 19.(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홈페이지 : 군청 홈페이지(군민참여 - 군민제안 / 신문고 연계)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각 1부**

- **제안서는 2장 이내로 제한 (개인별 2건 이내로 제한)**
- 제출한 제안서의 모든 권리는 거창군으로 귀속

☐ **결과 발표 : 2023. 6월 중 / 수상자 개별 통보**

□ 우수 제안자 시상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비 고
인 원	**1명**	**2명**	**4명**	
부 상	**20만원**	**10만원**	**5만원**	거창사랑상품권 (모바일)

□ 심사기준 : 창의성, 공공성, 지역활성화 정도, 능률성 ※ 아이디어

우수성에 따라 시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항목	내 용	배점
창의성	사업 내용과 사업목적의 독창성 정도	30
공공성	제도 취지와의 적합성, 사업의 공익성 정도	30
지역 활성화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주민참여도	20
능률성	예산과 인력의 적절성 및 사업 추진의 신속성	20
합계		100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작의 내용이 타 기관·단체 등의 사업내용과 동일 유사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상금을 회수함

○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의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심사

○ 선정된 제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거창군에 귀속됨

○ 제출 또는 선정된 아이디어는 보완하여 거창군에서 활용할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은 선정 심사에서 제외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정해진 기금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 공익과 관련 없이 사익을 위한 제안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제안
- 이미 선정된 제안 또는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
- 일반 통념상 그 제안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문　　의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전략담당(☎055-940-3693)

붙임1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제안서**

<table>
<tr><td colspan="5">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제안서</td></tr>
<tr><td colspan="5">접수번호 : (미기재)</td></tr>
<tr><td rowspan="4">제안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연 락 처</td><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이 메 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응 모
내 용</td><td>제 안 명</td><td colspan="3"></td></tr>
<tr><td>현황 및
문제점</td><td colspan="3">제안의 배경이 된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td></tr>
<tr><td>제안내용</td><td colspan="3">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 2장 이내 작성</td></tr>
<tr><td>기대효과</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제안자 : (서명)
거창군수 귀하</td></tr>
</table>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제안자의 본인 확인 절차
- 공모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 공모 관련 추가 안내 및 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1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접수는 가능하나 공모전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23 -721호

남상 한산(207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남상면 대산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남상 한산(207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거 창 군 수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 업 명 : 남상 한산(207호선)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567.0m, B=6.5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81-2번지 일원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055-940-3552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이 외 권 리 자			비 고
				(m^2)	(m^2)	주소	성명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 계			35366	5649						
1	남상면 대산리	281-2	도	267	226	거창군					
2	남상면 대산리	281-6	전	30	3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25	김*임				
3	남상면 대산리	281-4	전	198	19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382	김*임				
4	남상면 대산리	282-2	도	251	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82-2	한*석				
5	남상면 대산리	282-3	대	261	1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82-2	한*석				
6	남상면 대산리	1488	도	1,098	765	국(건설부)					
7	남상면 대산리	331-1	도	251	161	거창군					
8	남상면 대산리	329	전	840	3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한산1길 25	최*학				
9	남상면 대산리	322	과	1,024	20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한산1길 25	최*학				
10	남상면 대산리	322-1	대	568	5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78	장*정				
11	남상면 대산리	330-2	도	60	60	거창군					
12	남상면 대산리	330-5	답	6,243	498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3가 43	김*영				
13	남상면 대산리	322-2	임	894	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46-2, 215동 603호 (상도동,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김*식				
14	남상면 대산리	415-2	도	271	6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1길 12	김*현				
15	남상면 대산리	415-3	전	221	2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1길 12	김*현				
16	남상면 대산리	330-4	과	3,392	406	거창읍 대동리 88-90	김*현				
17	남상면 대산리	416-2	도	149	109	거창군					
18	남상면 대산리	319-2	도	86	38	거창군					
19	남상면 대산리	318-2	도	36	15	거창군					
20	남상면 대산리	316-3	도	179	9	거창군					
21	남상면 대산리	316-4	답	79	79		김*환				
22	남상면 대산리	1467-92	천	12,618	1,019	국(환경부)					
23	남상면 대산리	352-2	천	101	101	거창군					
24	남상면 대산리	353-2	도	33	33	거창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이 외 권 리 자			비 고
				(m^2)	(m^2)	주소	성명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25	남상면 대산리	353-6	천	28	28	거창군					
26	남상면 대산리	354-1	천	339	183	거창군					
27	남상면 대산리	353-7	천	143	120	거창군					
28	남상면 대산리	352-1	천	124	64	거창군					
29	남상면 대산리	352	답	1,788	12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21	김*율				
30	남상면 대산리	353-1	답	1,070	9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121동 603호 (풍호동,우성아파트)	김*수				
31	남상면 대산리	353-5	천	133	133	거창군					
32	남상면 대산리	353-3	답	2,343	28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1102호(하나로3차아파트)	김*락				
33	남상면 대산리	354	답	187	16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1102호(하나로3차아파트)	김*락				
34	남상면 대산리	353-4	도	61	22	거창군					

거창군 공고 제2023-723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거 창 군 수

1. 2023년 1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연번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조건(원)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6길 22	20230107	20240106	10,000,000	372,000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47	20230101	20231231	5,000,000	300,000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9	20221203	20231202	2,000,000	300,000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47	20221230	20231117	3,500,000	300,000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47	20230106	20231231	5,000,000	270,000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47	20230101	20230724	8,000,000	270,000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47	20230106	20240122	3,000,000	300,000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57	20221224	20231223	25,000,000	229,000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47	20230202	20240202	3,000,000	300,000
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61	20230125	20240124	48,000,000	15,000
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47	20230219	20240219	3,000,000	290,000
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47	20230222	20240222	3,000,000	240,000
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9	20221221	20231220	3,000,000	200,000
14	경상남도 거창군거창읍 대평1길 70	20230120	20240120	5,000,000	380,000

※ 문의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담당자 ☎ 055-940-3604

거창군 공고 제2023-726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정안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다양해지는 후생복지 수요에 대하여 거창군 공무원 등 직원의 복지를 효과적 충족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 적용 배제 또는 제한 사유의 합리적 변경(안 제3조 ②항)

1) 현행: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2) 변경: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범죄 등)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나. 후생복지시설의 추가·신설 (안 제6조 ①항)

1)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2)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 후생복지 사업의 다양화, 현행화(안 제7조)

1) 구내식당 운영 지원 ⇨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범위 확대)

2)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신설)

3)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 장제비 지원(장제용품 삭제)

3)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 출산·생일축하 격려품 지원(범위 확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179), 이메일(rlove0228@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 3. 9.(화) 18:00까지 도달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바. 문의전화 : 055-940-3192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정안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다만「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
3.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범죄 등)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군수와 의장은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3.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2. 장제비 지원
3.「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경검진 비용 지원
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
5.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6.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7. 출산·생일 격려품 지원
8.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9.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다만「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다만「지

현 행	개 정 안
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교육훈련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군수와 의장은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교육훈련 중인 소속 공무원 **3.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범죄 등)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군수와 의장은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3.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현 행	개 정 안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2.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3.「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경검진 비용 지원 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 5. 구내식당 운영 지원 6.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7.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8.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2. 장제비 지원** 3.「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경검진 비용 지원 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 **5.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6.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7. 출산·생일 격려품 지원** **8.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9.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